



보건복지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관련 발생한 자금(손실보상금 등)의 회계처리방안 질의 회신

1. 사단법인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기획운영부-2658(2020.12.18., "코로나19관련 발생한 자금(손실보상금 등)의 회계처리방안 문의")호와 관련됩니다.
2.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에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종류에 따라 대응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수익으로,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의 주된 의료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료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며,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회계 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043-715-8570)과 협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사단법인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주무관	이승열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장	최은희	의료기관정책과장	전결 02/05
					오창현

협조자

시행 의료기관정책과-770 (2021.02.05) 접수 의료서비스혁신단-178 (2021.02.05)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보건의료정책국 의료기관정책과
 전화 044-202-2481 전송 044-202-3926 / leesy0536@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